



장수군
JANGSU COUNTY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

정기 제427호 2019. 12. 2(월)

조례

장수군 조례 제 2378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장수군 조례 제 2379호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장수군 조례 제 2380호	장수군 화장장여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장수군 조례 제 2381호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장수군 조례 제 2382호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장수군 조례 제 2383호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19
장수군 조례 제 2384호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장수군 조례 제 2385호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장수군 조례 제 2386호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장수군 조례 제 2387호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47
장수군 조례 제 2388호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50
장수군 조례 제 2389호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56

규칙

장수군 규칙 제1145호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4
---------------	---------------------------------	----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19 – 1080호	장수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7
장수군 공고 제 2019 – 1089호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안 입법예고	73
장수군 공고 제 2019 – 1099호	「장수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1
장수군 공고 제 2019 – 11114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2
장수군 공고 제 2019 – 11119호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1
장수군 공고 제 2019 – 1121호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17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19-12호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2

공고

장수군공고 제2019-1110호	도로지정공고	135
-------------------	--------	-----

회 람							
--------	--	--	--	--	--	--	--

발행 장수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조례 제2378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에서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와”를 “사람 및 사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및”을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자는 지급”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를 “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을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를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로, “가족”을 “수권자”로 한다.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8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 중 2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 단체"를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별 신청내역"을 "신청내역"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등을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하는 한편, 신청자격 중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 등의 자긍심 제고와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단체를 통한 사전확인과 신청 대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훈단체 용어가 반복 사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이를 삭제 (제2조)
- 나. 호국보훈수당 신청자격과 관련, 연령제한 삭제 및 대상자 추가확대
 - 1) 신청 시 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 시 까지 주민등록과 거주요건을 갖추도록 명문화 하여 실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도록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현행 65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대상을 확대(제3조제1항)
 - 2)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에 독립유공자(본인 또는 수권자) 및 특수전 임무유공자(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를 확대(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다. 해석상 불분명한 규정 정비 및 한자식 표기어 순화(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1)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는 보훈대상자(상이군경, 6.25 · 월남참전자 등) 본인 1명으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2) 한자어 “자”를 “사람”으로 순화하여 표기
- 라. 2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중지급을 할 수 없도록, 중복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제4조제1항)
- 마. 보훈처를 통해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등 자격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종전의 호국보훈수당 신청 시 미리 해당 보훈단체의 확인 날인을 받아

보훈단체를 통해 대행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신청절차를 생략(제5조제1항)

바. 안 제3조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령요건 층족에
따른 지급기준일 규정을 삭제(제6조)

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조치 시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제8조제3호)

장수군 조례 제2379호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및 관리료)”를 “(사용료 및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리료”를 “관리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리료를”을
“관리비를”로 한다.

제10조 중 “관리료”를 “관리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장소의 반환)”을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리료”를 “관리비”로 한다.

별표 2 서식 중 “관리료”를 “관리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6개월 이내	70
2	6개월 초과 1년 이하	65
3	1년 초과 2년 이하	60
4	2년 초과 3년 이하	55
5	3년 초과 4년 이하	50
6	4년 초과 5년 이하	45
7	5년 초과 6년 이하	40
8	6년 초과 7년 이하	35
9	7년 초과 8년 이하	30
10	8년 초과 9년 이하	25
11	9년 초과 10년 이하	20
12	10년 초과 11년 이하	15
13	11년 초과 12년 이하	10
14	12년 초과 13년 이하	7
15	13년 초과 14년 이하	3
16	14년 초과	0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관련조항 정비(제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조문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관리료 → 관리비

다. 공설묘지 사용료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마련 (제11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장수군 조례 제2380호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구당 화장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화장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과 장사복지를 위해 화장장려금을 인상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장장려금 인상 지원(제4조)
(1구당 화장사용료의 50% →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50만원)

장수군 조례 제2381호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군수는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의제2항 위원의 해임, 해촉 사항을 반영하여,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제4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 정비(제4조제4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의제2항 위원의 해임, 해촉 사항 반영

장수군 조례 제2382호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⑤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4조의2(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 2제2항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 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8장(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30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제2조)
- 나.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신설(제3조의2)
- 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제19조의2)
- 라. 상인회의 보조사업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제20조)
- 마.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신설(제22조의2)
- 바.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제24조의2)
- 사. 시장정비사업 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제30조)

장수군 조례 제2383호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거주 ·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 ·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청년” 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청년정책”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법인 · 단체 등이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 농업 ·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 증진 · 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 ·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법인 ·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 농업 ·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 ·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군수 또는 법인 · 단체 등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 농업 · 복지 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 ②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그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 위원을 포함)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청년시설 및 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 ·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 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 · 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④ 군수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과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의 역량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격차 해소 및 직업탐색을 위하여 청년의 적성 발굴,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년활동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
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
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등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
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사업
2.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
3.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사업
4. 청년 경제·금융·생활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6. 청년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주간 행사 등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사업수행)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청년협의체가 미리 구성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제정이유

○ 장수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적·체계적이며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여 청년의 고용제도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청년 일자리등 청년지원 조례 제정 협조
(도 일자리경제정책관-9377, 2018. 8. 1.)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책무 등을 규정(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정책연구 등을 규정(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청년시설 설치,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장수군 조례 제2384호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적취득자 지원

제4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민등록초본
- 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시책명	지원대상 및 내용	비고
전입세대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 타 시 · 군 · 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세대원당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1회에 한하여 지급
결혼축하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49세 이하의 남녀로,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지원내용 : <u>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 지원금 환수 <u>결혼축하금을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 전출 · 이혼 또는 허위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u> 	1회에 한하여 지급 (부부중복 지급 금지)
학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장수군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과 종복지원 금지 ※ 단, 부모,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함 	분기별 지급
인구증가 유공기관 ·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 관내 기관 · 기업의 직원이 타 시 · 군 · 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5명 이상) – 지원내용 : 1인 기준 10만원 범위내 지원 – 추가지원 : 1년 이상 거주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급 ※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국적취득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 300만원 3회 분할 지급 (최초 주민등록시 100만원, 1년 경과후 100만원, 2년 경과후 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1쪽)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전입세대원 결혼축하금 고등학생 학자금 유공기관·기업 국적취득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관계	
세부신청사항					
신청 사항	전입세대원 지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결혼축하금 지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혼인일자	
고등학생 학자금	학생명	생년 월일	학교명 (학년)		
	보호자명 (신청인 이외)	생년 월일	관계		
유공기관 · 기업 지원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입인원
국적취득자 지원	국적취득일자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구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뒷면 참조	1. 주민등록초본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3쪽 중 제2쪽)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청사항별로 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은 최초 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 전출, 이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전입세대원 지원	1. 주민등록초본(세대원 별 각각) 1.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결혼축하금 지원	1.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각) 1. 통장사본
학자금 지원	1. 주민등록초본(부모, 학생 각각) 1.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부, 모 직장재직시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 지원	1. 주민등록초본(직원 각각) 1. 인구증가시책 신청 세부내역(별지 제3호서식)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국적취득자 지원	1. 주민등록초본 1.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민 원 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세대원 현황, 혼인일자 등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 가족현황, 혼인일자 등) 활용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 성명 : _____
(서명) |
|--|--------------------|

[별지 제2호서식]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

신청인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전화번호	
	부서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직장주소			
	교육비 지급여부	지급여부	여, 부	※하기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하고 지급 또는 지원계획이 있을때에는 그 지원(예정)금액을 기재
지급시(계획) 지원(예정)금액		총 분기당	월 원	
확인기간	년 1월(1/4분기) ~ 년 12월(4/4분기) (학자금을 지원 받을 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인 이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신청인의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주소			
학생 (고교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학생의 학자금(교육비)을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또는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 (과)
사업주(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주 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직장 재직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미제출)

[별지 제3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신청 세부내역

1. 개정이유

-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추진 사업 중 일부 기준을 보완하고 인구증가 시책지원 신청접수 시 지급대상자격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처리시 법적근거 마련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청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사용 용어 “국적취득자”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인구증가 신규시책 사업 지원내용에 “국적취득자 지원” 추가(제3조)

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신청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근거 내용 추가(제5조)

라.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일부 보완 및 신규 시책 추가(별표)

- 결혼축하금 지원자격 보완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명시
- 국적취득자 지원(신규) :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총 3,000천원 3회 분할 지급(최초 주민등록시 1,000천원씩, 1년경과 후 1,000천원, 2년 경과 후 1,000천원)

마.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에 국적취득자지원 신청 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별지 제1호서식)

- 신청사업 선택 사항 및 세부신청사항에 “국적취득자 지원”추가 및 신청인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로 전면 수정

바.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인구증가시책 신청 세부내 역(별지 제3호서식) 신설

장수군 조례 제2385호

장수군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 · 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귀농 · 귀촌인”이라 한다)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게스트 하우스”, “귀농인의 집”, “체재형 주말농장”을 통칭한다.

- 가.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 귀농 · 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시설로 주택과 실습 농장
 - 나. 게스트 하우스 : 예비 귀농 · 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의 방
 - 다. 귀농인의 집 : 빙집 또는 빙 건물을 장기 임대 및 수리 또는 신축하여 귀농 · 귀촌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시거주시설
 - 라. 체재형 주말농장 : 예비 귀농 · 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시설로 주택과 실습 농장
7. “농촌체험교육시설”이란 도시민의 농촌체험교육을 위하여 제공하는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8. “귀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군 이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귀농 · 귀촌인 영농정착,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12.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
13. 귀농 · 귀촌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삶터 기반조성 사업
14. 도시민과 예비 귀농 · 귀촌인의 농촌체험을 위한 농촌체험교육시설,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사업,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귀농 ·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3(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4. 보조금 환수여부 결정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2. 귀농 · 귀촌 게스트 하우스
3. 귀농인의 집
4. 체재형 주말농장
5. 농촌체험교육시설

제17조(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의 기능)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군수가 귀농 · 귀촌인과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 · 귀촌인에게 거주를 위해서 임대
2.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귀농 · 귀촌 게스트 하우스, 체재형 주말농장, 농촌체험교육시설
 - 가. 귀농 · 귀촌인, 예비 귀농 · 귀촌인, 도시민 대상 영농교육, 농촌체험교육, 농기계 교육, 현장 영농실습 교육 등
 - 나. 농촌생활 및 문화, 농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거주공간 및 실습농장 제공

제18조(입소 자격 및 기간) ①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의 입소 자격은 귀농 · 귀촌인, 예비 귀농 · 귀촌인, 도시민으로 하되, 군으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② 임시거주시설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단, 게스트하우스는 6개월 이내)
- ③ 농촌체험교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교육기간으로 한다.

제19조(사용신청 및 사용자 선정) ①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체재형 주말농장은 서류 및 면접 심사로, 귀농 · 귀촌 게스트하우스와 농촌체험교육시설은 서류 심사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제20조(사용료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간 사용료는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월별 사용료는 매월 5일 이내, 기간별 사용료는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임시거주시설 중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게스트 하우스, 체재형 주말농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 농촌체 험교육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 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 산한다.

제21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6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귀농·귀촌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 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2020년 귀농·귀촌신규사업 및 임시거주시설, 농촌체험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귀농·귀촌사업에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 나. 2020년 귀농·귀촌신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4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다.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 라. 위원회 심의 사항에 귀농귀촌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의 환수여부 결정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
- 마.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바. 준용 및 시행규칙을 신설함으로써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집행방법을 마련하고자 함(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장수군 조례 제2386호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 중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을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현재 장수군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경우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묻는 조항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체가 어려운 관계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험금 변상기준(제5조)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변상기준으로 명시

장수군 조례 제2387호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규정(제5조)
 -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
- 다. 교통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라. 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장수군 조례 제2388호

장수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에 관한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4. "정부지원"이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정부지침에서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지원)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② 지원금액은 정부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가격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2. 신청인 통장사본
3.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산모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제출은 생략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비용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서비스 이 용	지월유형		<input type="checkbox"/> 단태아(<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쌍생아(<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서 비 스 이용기간	~	서비스 기 간	<input type="checkbox"/> 단축	<input type="checkbox"/> 표준	<input type="checkbox"/> 연장	서비스 등 급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	원	지원제외금액 (본인부담금 중 10%)		원																
		청구금액	₩	(금)		원정)																
<p>「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p> <p>장 수 군 수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첨부 서류</td> <td>담당 공무원 확인사항</td> <td colspan="6">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td> </tr> <tr> <td>신청인 제출서류</td> <td colspan="6">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p>								첨부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장

1. 제정이유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지원(제4조)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및 서비스기간에 따른 기준 가격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나. 환수조치(제6조)

장수군 조례 제2389호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생계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등 감면) ① 현재 장수군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 사용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에 따른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2.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3.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4.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6.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7.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율에 의하여 산정한 이용료 등이 십원 단위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

제5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으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를 “같으며,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100분의 50 감경

- 가.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18유공자
-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급여를 받는 자
- 사. 「아동복지법」제10조에 따른 소년·소녀가장세대
-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 자. 「장수 군민의 장 조례」에 따른 군민의장을 수여받은 자
- 차.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카.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써 군수가 특히 감면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2. 100분의 30 감경

가.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녀
가 2명인 가정

②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 및”을 “한다),”로, “한다”를 “한다) 및 힐링센터, 포니랜드(포니하우스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포니랜드 시설”이란 포니하우스 · 마차로 · 마방 · 퇴비사 · 창고 · 어린이놀이터 · 꿈나무 동산과 이 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7. “힐링센터 시설”이란 마장 · 사무실과 이 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게르(숙박시설) 및 야영장 등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감경

③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④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감경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장료 ·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장료 ·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감경

⑥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⑦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미취학 아동’란 다음에 ‘다자녀가정(3명 이상)’ 및 ‘다자녀가정(2명)’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작은목욕탕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이 용 요 금 표			
구 分		금 액	비 고
우대	수 급 자	1,5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노 인		65세 이상
	미 취 학 아 동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다 자 녀 가 정 (3 명 이 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다 자 녀 가 정 (2 명)	2,000원	
일 반		3,000원	

1. 제정이유

- 관내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 등 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 유출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공공시설물 이용료 등 감면 근거 마련(제4조)
 - 다. 이용료 감면에 대한 환수 규정(제5조)
 - 라. 공공시설물 개별 관리·운영 조례 개정(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너울관(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계르 및 야영장 등 사용료
 -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숙박시설(5종) 사용료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편의시설(5종), 숙박시설(8종) 사용료
 -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 야영장 및 기타시설(2종), 숙박시설(2종) 사용료
 -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오토캠핑장 사용료
 -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욕탕 이용요금
- ※ 3자녀 이상 가정 : 이용료 등 50% 감경 / 2자녀 이상가정 : 이용료 등 30% 감경
- ※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와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다 자녀가정의 구성원 개인별로 감면 적용하고, 그 외의 5개 조례는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경우 4명 이상 공동 이용 시, 자녀 2명 가정의 경우 3명이상 공동이용 시 감면 적용

장수군 규칙 제1145호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철거 및 화장 · 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공설묘지반환및사용료환부원”을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로, “인감증명서를”을 “신분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관리료”를 각각 “관리비”로 한다.

제8조 중 “훼손하였”을 “훼손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관리료”를 “관리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관리료”를 “관리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사용료환부원”을 “사용료 반환신청서”로 “환부액”을
“반환액”으로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민원 편의성 제고와 공설묘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처리규정 마련을 위하여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근거 신설(제2조의2)
- 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문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7조)
- 다. 분묘 훠손에 대한 규정 변경(제8조)
(훼손을 → 훠손하거나 타 공작물 설치로)
- 라. 원상복구 및 실비보상(제8조)과 유사 중복 내용의 규정 삭제
(제9조)

장수군 공고 제2019-1080호

장수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군민”을 “장수군민”으로, “증진하고자”를 “증진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군민”을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장수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수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 2. 지역주민·대표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 혈업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 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증진하고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3. (생 략) <p>〈신 설〉</p>	<p>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 장수군민 ----- 증진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p> <p>제2조(정의) ----- ----- 1.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장수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수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p>
<p>〈신 설〉</p>	

현 행	개 정 안
	<p>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u>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 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p> <p>2. 지역주민·대표</p>
〈신 설〉	<p>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0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혈업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p>
〈신 설〉	<p>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신 설〉	<p>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u>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u></p> <p><u>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신 설〉	<p><u>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신 설〉	<p><u>제13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신 설〉	<p><u>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제7조 ~ 제9조 (생 략)	<p><u>제15조 ~ 제17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u></p>

장수군 공고 제 2019-1089호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안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수용한 장수군의 군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화·개방화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모색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단장의 직무,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위원의 해촉, 사무지원, 공청회 등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라. 위원회운영 등에 대한 결과보고, 비밀엄수, 수당, 운영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금후 계획

-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제출 등 : 2019. 12월중
나. 전라북도 조례안 검토, 공포 · 시행 : 2019. 12월 중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전화 : 063-350-2031,
FAX : 063-350-5702)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5.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담당자 육학수 (전화 : 063-350-203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조례 제 호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수군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 제안 한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된 사항
2. 복지, 문화, 산업경제, 농업농촌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군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 · 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단장과 부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 ③ 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행정, 법조, 정치 분야 등 풍부한 경험과 시견을 갖춘 사람
3. 문화관광,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
5. 장수군 의회 의원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 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의운영)** ① 단장은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기획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지원) 군수는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의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등)** ① 기획단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보고 등)** ① 단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또는 연구 · 제안된 정책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획단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장수군 공고 제2019-1099호

「장수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가스공사의 승인과 시행방법 및 공사시행 절차·책임 등 규정
- 나) 가스공급의 사용과 신고, 가스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권리·의무
의 승계, 가스공급 중단 및 사용제한, 가스사용 요금 및 수수료, 가스시
설의 관리, 공급자 선정 및 책무, 위탁수행기관 지정,

LPG배관망심의위원회 구성 · 기능 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2월16일까지 의견서(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 전자우편 : whph4@korea.kr

- 팩 스 : 063-350-57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전화 063-350-2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장수군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상지역 등 구분을 정함 (안 제1조~제5조)
- 나. 가스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12조)
- 다. 가스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제18조)
- 라. 가스 요금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제28조)
- 마. 가스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9조~제32조)
- 바. 가스 공급자의 선정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3조~제38조)
- 사. 위탁수행기관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9조~제40조)
- 아. LPG배관망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1조~제46조)

3. 금후계획

-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의뢰 : 2019. 9월
- 입법예고 : 2019. 10월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2019. 10월
- 군의회 제출 등 : 2019. 11월

4. 조례안 및 관계법령 : 붙임

장수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PG배관망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LPG배관망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가스공사"란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중지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급자"란 LPG배관망시설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말한다.
4. "수요가"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가스설비"란 저장시설, 공급관, 연소기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기본요금"이란 가스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형태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을 말한다.

7. “수요가 분담금”이란 가스의 공급을 받기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LPG배관망시설 설치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가스설비의 구분) 가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 가스설비 : LPG저장시설 및 도로를 통하여 형성되는 주공급관,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대지경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수요가 가스설비 : 수요가의 대지경계 안쪽의 가스연소기를 포함한 가스 설비를 말한다.

제5조(가스공사의 구분) 가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가스공급신청에 의한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2. 변경공사 :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가스설비의 원형을 변경시 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가스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가스설비의 사용중지 등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공사
5. 중단공사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가스설비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공사

제2장 가스공사

제6조(가스공사의 승인) ① 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가

가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가스공사를 승인한다.

1. 가스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가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급중지처분을 받은 가스사용자 등이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 및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가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1. 가스를 몰래 사용한 자

2.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도로굴착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할 때

3. 새로운 가스시설을 함으로써 기시설 수요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이 있을 때. 다만, 수요가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 및 재반 법령 등에 따라 굴착행위가 제한된 토지를 통과해서 공급해야 하는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수요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수요가는 한 개의 가스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요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2. 제1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겸침이 용이한 외부벽체에 설치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수요가의 신청에 의해 가스설비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수요가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때 소요비용은 수요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공급사와 협의하여 공급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할 수 있다.

③ 공용 가스설비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등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용 가스설비공사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보고하기 위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공자는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관련 가스법령기준에 따라 실행 한다.

제9조(준공검사) ① 가스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준공서류(준공내역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준공계를 접수후 7일이내에 지정하는 자에게 준공검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가스설비 관리) ① 제8조제1항에 의한 공용 가스설비와 수요가 가스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용 가스설비에서 대지경계선안 가스계량기까지의 가스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는 검정기준에 의하여 매월 나누어 수요가에 고지한다.

②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하고, 가스설비 수선비용도 수요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요가 대지 경계까지의 가스설비 및 계

량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가스설비의 누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가스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나 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가스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가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장 가스의 공급

제13조 (가스의 사용) ①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스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건축물 외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공급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 ① 가스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스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쇄 또는 봉인하고자 할 때

2. 가스설비의 파손, 누설, 기타 사유로 가스공급에 이상이 있을 때
 3. 가스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였을 때
 5. 가스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가스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
 6.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7. 그 밖에 군수가 가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가스사용자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가스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 (가스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가스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스설비를 보호·관리하여 누설·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가스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때에는 신규 가스사용자와 기존의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스공급 중단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스공급중단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마을방송, 정보통신

망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중단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가스공급 중지와 봉인) ① 가스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가스공급자에게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가스설비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가스공급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스설비를 봉인할 수 있다.

1. 가스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가스를 공급 받지 아니할 때
3. 가스용기 등 기존시설과 병용하는 경우로서 가스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가스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제2항에 의한 가스공급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공급신청이 없을 때
6. 가스설비를 봉인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공급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9조 (가스사용요금의 징수) 가스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가스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가스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제20조 (가스사용 요금) ① 요금은 “LPG배관망 관리 및 운영규정”의 업종별 기본요금과 실제사용요금 및 계량기 교체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가스공급 중지의 경우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가스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업종의 구분) ① 기본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LPG배관망 관리 및 운영규정”의 기본요금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수용가 중 1개의 가스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기본요금 업종을 적용한다.

③ 신고태만이나 고의로 업종을 달리하여 낮은 기본요금 업종요금을 납부한 때는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을 추징하며, 업종을 직권변경 할 수 있다.

제22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가스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하되, 가스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량한다.

1. 계량기 고장 또는 가스설비의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2.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4조(가스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사용자등은 가스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택배 및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 ③ 가스공급의 중지, 가스설비의 폐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가스사용자등이 가스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LPG배관망 관리 및 운영규정」제21조를 준용한다.

제2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및 은행자동이체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할 수 있다.

- ②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책임 없는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가스공급 중단 및 사용제한시 기본요금 전액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가스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가스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관리

제29조(가스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적 검사
에 따른 조치사항을 가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② 검사결과 가스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군
수는 해당 가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스설비의 교체 등 필요
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3조의 대상지역내 LPG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배관 파손사고의 위험
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LPG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가스공급의 중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조례 및 LPG배관망 관
리 및 운영규정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가스를 몰래 사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공사를 시행한 사람
4. 가스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을 포탈한 사람,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가스를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6.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사람

7.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8. 가스관계공무원 및 위탁수행기관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9.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중지 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공급중지 처분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

제31조(가스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가스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 제32조(가스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가스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가스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6장 공급자

- 제33조(공급자 선정)** ① LPG배관망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입찰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안정적인 LPG 공급방안
 2.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 방안

3. LPG배관망시설 유지보수 방안
 4. 소비자 보호 방안
 5.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선정된 공급자는 LPG배관망 관리 및 운영규정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군수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⑦ 계약기간은 최초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4조(공급자의 책무)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LPG배관망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원활한 LPG 공급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3. LPG배관망시설의 유지 · 보수 · 검사 · 검침 · 관리
4. 공급자가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기본요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계량기 교체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30일까지 위탁수행기관으로 이체
5. 매월 5일에 가스요금 기준가격(공급단가)을 공지

제35조(LPG배관망시설 사용료) ①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② 사용료 산출기준 · 납기 · 납부 방법 등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권리양도의 제한) 공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37조(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LPG배관망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5. 계약 해지조항에 해당하는 등 계약서에 의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LPG배관망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7장 위탁수행기관

제39조(위탁수행기관 지정) ① 군수는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공급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탁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위탁수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수행기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제9조의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

제40조(위탁수행기관의 업무)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 변경 · 수선 · 철거 · 중단공사 등과 관련한 설계, 감리, 검수 등의 시공업무 관리

2. LPG배관망시설의 운영에 대한 공급자 선정
3. 공급자의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독
4. 공급자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LPG 공급과 요금부과 적정성 등) 관리
5. LPG배관망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DB 갱신, 통계정보 제공 등의 전산관리 업무
6. LPG배관망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기류의 구매를 위한 입찰 관련 업무
7. LPG배관망심의위원회 자문
8. 그밖에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장 LPG배관망심의위원회

제41조(LPG배관망심의위원회) LPG배관망의 안전관리등을 위하여 LPG배관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의원, LPG배관망 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LPG배관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3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증설, 변경 등의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2. LPG배관망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
3. 기타 LPG배관망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제4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7조(지도 · 감독)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공급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 · 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지원) 군수는 LPG배관망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및 공급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공과금 등) 공급자가 LPG배관망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50조(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의 의무) ① 공급자와 위탁수행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LPG배관망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와 위탁수행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 ③ 공급자는 LPG배관망 시설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6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2019-1114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계획안

1. 제안이유

-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대상사업 및 한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융자 대상사업 중 「그 밖의 농업생산시설에 필요한 사업」에서 농기계 구입 추가(안 제8조 제5호)
- 자금지원 제외대상 중 「토지 및 농기계」에서 농기계 삭제(안 제8조 제5호)
- 농촌 소득사업 지원대상자 융자한도 조정(안 제12조 제1항)
※ 개인 5천만원 → 1억원, 법인 1억원 → 2억원

3. 의견제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자우편 love92312@korea.kr, 팩스 063-350-5714)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전화 063-350-23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수·축·임산물의 생산시설을 말한다.
5. “농기계”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장수군농촌소득사업 융자·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장수군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자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자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실과 및 직속기관 담당 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 및 직속기관의 실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농촌소득사업 금고운영

제7조(융자업무 대행)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경제작목 : 원예작물, 임산물, 인삼, 버섯 등
2. 축 산 : 한우, 젖소, 양돈, 닭, 오리, 양, 사슴, 꿀벌 등
3.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4. 농수산물 저장 · 가공 · 유통사업 : 가공 · 유통 시설, 지역명품 육성, 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 등
5. 그 밖의 농업생산시설에 필요한 사업 및 농기계 구입, 단 토지 구입에 따른 자금지원은 제외한다.

제9조(융자금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읍 ·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대표
2. 주된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의 대표
3.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1.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자
- ② 군수가 응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응자대상 선정요건 적정여부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응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자대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대상자·지원액 등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도 응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응자한도 및 이율) ① 응자한도액은 농가 세대당 1억원 이하,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응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13조(응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응자기간은 3년거치 7년이내의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중복응자의 금지)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응자금 상환완료 이전에는 상

환의무자의 세대 구성원이 융자금 신청 시 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16조(감독) 군수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처분)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징수한다.

제4장 특별회계 설치

제18조(설치) ① 소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농촌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제20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회수융자금·

회계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 · 기타잡수입 ·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소득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한다.

제2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수군 공고 제2019-1119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장 수 군 수

1. 조례명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신축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관리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6)
-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2) 팩 스 : 063-350-5703
- 3) E-mail : dbtjfls@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담당자(전화 : 063-350-2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조(공동작업장) ① 군수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하 “공동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작업장의 위치 및 종류는 별표1과 같다.
- ③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7조(공동작업장) ① 군수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하 “공동작업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에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작업장의 위치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 제8조 (생략)	제8조 · 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별표1)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시설의 종류 1. 위치 :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2.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연번</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시설의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무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2</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상담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3</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다목적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4</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휴게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5</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공동작업실1</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6</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공동작업실2</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7</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공동작업실3</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body> </table>	연번	시설의 종류	비고	1	사무실		2	상담실		3	다목적실		4	휴게실		5	공동작업실1		6	공동작업실2		7	공동작업실3	
연번	시설의 종류	비고																							
1	사무실																								
2	상담실																								
3	다목적실																								
4	휴게실																								
5	공동작업실1																								
6	공동작업실2																								
7	공동작업실3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수군 공고 제2019-112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공동작업장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시설의 무상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작업장의 권리 양도의 제한 및 훼손 · 분실에 대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2) 팩 스 : 063-350-5703
- 3) E-mail : dbtjfls@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담당자(전화 : 063-350-2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호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동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작업장은 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 · 수익 허가)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작업장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원상회복)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작업장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에 훼손·분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설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12호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자치법규안 검토 결과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위탁관리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정의 중 “농촌융복합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으로 변경하고 자목에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므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를 도모함(안 제2조)
- 조례 제26조 관리위탁 규정 중 인용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이를 개선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
(전자우편 muhyul@korea.kr, 팩스 063-350-5714)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전화 063-350-23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다.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소상공인
 -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 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중소기업자
 -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1인 창조기업
 - 자.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6. “유하거리”란 하천·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7.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 운영)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전문가 2명
 3. 관련분야 공무원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도별 군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시행,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촌융복합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6차산업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보급
3.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 지원 등
4.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15조(공동사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8조(창업 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 · 품질 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 · 제공

제19조(연구 · 개발)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 · 개발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 ·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의거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균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조신설 2019. 2. 21.],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 2. 21.>]

제22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9. 2. 21.],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2019. 2. 21.>]

제23조(농촌용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용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21.]

제24조(거리의 환산) 제22조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4장 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농촌용복합 가공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장수군 농촌용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용복합 가공시설(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에 둔다.

제2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장수6차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③ 가공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1조에서 이동 <2019. 2. 2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수군 공고 제2019-1110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9년 11월 28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2607	23m	4m	10㎡	문진우	동의

2019년 11월 28일

장수군수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을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